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3년 6월 30일
- 회부일자 : 2003년 7월 1일

3. 제안이유

- 기술경쟁시대를 맞아 직무발명에 대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의식을 확산하고
-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규정을 재정비하여 직무발명을 활성화 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-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여 명확히 함(제2조)
 - 발명기관의 장, 도유특허권, 처분, 처분수입금
- 발명의 승계결정 출원 처분을 용이하게 함(제7조, 제8조, 제11조)
 -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발명신고를 하고, 자치단체의 장이 승계여부 결정 및 내용통지, 출원, 처분을 하였으나

- 상기사항을 발명기관의 장이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허권의 등록·관리 및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함
- 특허출원시 “출원인” 기재방법을 변경함
 - 종전 : 지방자치단체의 장 [예, 충청북도]
 - 변경 : 발명기관의 장을 부기 [예, 충청북도(농업기술원장)]
- 도유특허권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처분규정신설(제11)
- 처분보상금, 등록보상금의 지급액을 조정함(제10조, 제12조, 제18조)
- 권리처분으로 도 세입을 증대시킨 기관에 대해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함(제13조)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특허법 제39조 제2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도록 개정(2001.2.3, 법률 제6411호) 됨에 따라, 동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,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,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,

- 안 제4조에서 충청북도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직무발명의 승재 및 장려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,

도유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사항에 포함하지 않은 사유와,

- 안 제15조(보상금의 반환)의 지급된 보상금은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

대통령령 제17657호에 의한 「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·관리 및 보상등에관한규정」 제20조 단서에서 “무권리자”의 특허취소 또는 무효에 대하여는 보상금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형평성 문제,

조례에 의하여 등록 및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1년부터 지금까지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지금까지 등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붙임 :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